

■「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」[별지 제2호서식]

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

신청인	업체명(상호명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이메일

신청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취득을 위해서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평가의 침투테스트 및 취약점 진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호의무, 비밀유지 및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

상호의무	신청기관은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보안 인증 범위 내의 정보시스템 중 평가팀 에서취약점 점검 및 침 투테스트를
------	---

수행하고자
요구하는
대상이 되
는 정보시
스템에 대
해서 불가
피한 사유
가 있지 않
는 한 최대
한 수행에
협조하여야
한다.

청기관은 평
가팀에서
취약점 점
검 및 침투
테스트를
수행하기
위해서 필
요한 정보
제공을 요
청할 경우
이를 제공
하여야 한
다.

청기관은 평
가팀에서
취약점 점
검 및 침투
테스트를

수행하기
위해서 필
요한 환경
을 요청할
경우 이를
제공하여야
한다.

가팀은 클라
우드컴퓨팅
서비스 보
안 인증범
위 내의 정
보시스템
중 신청기
관과 협의
된 정보시
스템에 대
해서 취약
점 점검 및
침투테스트
를 수행한
다.

가팀은 협의
된 정보시
스템 이외
의 정보시
스템에 대
해서 취약
점 점검 및
침투테스트

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청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가팀은 취약 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수행기간 및 대상, 수행 IP주소 등을 문서화하여 신청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
테스트의 대상은 아래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환경 구성에 따라 추가 혹은 축

소될 수 있
다.

외부
이용

가팀은 취약
점 점검 및
침투테스트
를 수행하
면서 발생
가능한 소
프트웨어,
하드웨어에
대한 영향
또는 손상
에 대해서
신청기관에
설명하여야
한다.

가팀은 취약
점 점검 및
침투테스트
를 수행하
면서 신청
기관의 소
프트웨어,
하드웨어에
대한 이상
동작 또는
손상을 최

소화하도록
노력하여야
한다.

청기관은 쥐
약점 점검
및 침투테
스트 기간
동안 신청
기관 내 정
보시스템침
입 및 이상
알림에 대
해서 예외
처리, 통보
등 대응 업
무를 수행
하여야 한
다.

청기관은 쥐
약점 점검
및 침투테
스트로 장
애발생 시
수행의 일
시 중단을
요청할 수
있으며, 평
가팀은 이
에 즉시 협
조하여야

한다. 단,
신청기관은
장애처리후
침투테스트
및 취약점
진단 수행
이 즉시 재
개될 수 있
도록 협조
하여야 한
다.

가팀은 취약
점 점검 및
침투테스트
를 수행한
후 결과에
대해서 문
서로 제공
하며, 신청
기관이 이
에 대한 설
명을 요청
할 경우 설
명하여야
한다.

평가팀은
취약점 점
검 및 침투
테스트를
수행한 후

발견한 문
제점에 대
해서 신청
기관에 보
완조치를
요청할 수
있다.

청기관은 요
청받은 문
제점에 대
해서 보완
조치를 지
체 없이 시
행하여야
한다.

청기관은 요
청받은 문
제점에 대
해서 보완
조치 방법
을 평가팀
을 통해 안
내받을 수
있으나, 최
종적인 보
완조치 방
법의 결정
은 신청기
관이 하며
이에 대한

책임은 신
청기관에
있다.

신청기관은
정해진 기
간 내에 보
완조치를
완료하고,
이에 대해
평가기관에
통보하여야
한다.

평가기관은
신청기관의
보완조치
적절성을
확인하고,
필요 시 이
행여부를
확인 할 수
있다.

평가팀은
보완조치
내역에 대
해서 취약
점 점검 및
침투테스트
를 수행하
여보완조치

	<p>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신 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SaaS/Pa aS 사업자 의 경우, 취약점 점 검 및 침투 테스트 등 의서에 대 해 IaaS 사업자의 동의를 득 하여야 한 다.</p>
비밀유지	<p>평가팀은 신청기관이 제공하거나, 취약점 점검 및 침 투테스트를 통해서얻은 아래의 기 밀정보에 대해서 외 부에 공개 또는 누출</p>

되지 않도
록 하여야
하며, 내부
에서도 최
소한의 필
요에 의해
서 기밀정
보가 취급
되어야 한
다.

- 1) 취약점
점검 및 침
투테스트를
위해서 신
청기관이
제공한 정
보
- 2) 신청기
관이 기밀
로 지정한
정보
- 3) 취약점
점검 및 침
투테스트의
결과
- 4) 일체의
개인정보
- 5) 신청기
관의 사업
정보

6) 이에
준하는 비
밀수준의
정보

평가팀은 타
법령에 의
해서 기밀
정보의 제
공을 명시
적으로 요
청받았을
경우 외부
에 제공할
수 있으나,
이 경우에
도 반드시
한국인터넷
진흥원을
통해서제공
하여야한
다. 한국인
터넷진흥원
은 외부에
기밀정보를
제공할 경
우에도 기
밀정보에
대해서 최
대한 비식
별화 조치
를 취하여

	제공하여야 한다.
책임제한	<p>평가기관은 취약점 점 검 및 침투 테스트로 인한 소프 트웨어, 하 드웨어에 대한 영향 또는 손상 에 대해서 책임을 지 지 않는다.</p> <p>취약점 점 검 및 침투 테스트의 수행은 신 청기관의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에 대해서 현 시점 및 미래의 침 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 하지 않는 다.</p>
상기 사항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.	

년 월 일	
신청인(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
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	비중
210mm×297mm[백상지(80g/m ²)]	